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12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 강릉시 의회 의장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현지 조사 및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 ~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및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탐방·견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